

의안번호	제호
의결연월일	년월일 (제회)

충청북도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촉구 건의안

제안자	건설환경소방위원장
제안연월일	2024년 6월 일

충청북도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제안연월일: 2024. 6. .
제안자: 건설환경소방위원장

□ 주 문

- 현재 존치되고 있는 충북지역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가 지정 당시의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지 재검토 하고,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고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전면 해제를 촉구 하고자 함.

□ 제안이유

- 대전권역으로 묶여 약 50년간 존치되고 있는 충북지역 개발제한구역 (현도면 일부, 옥천군 군서·군북면 일대/ 면적 약 54km²) 지역은 취약한 인프라시설과 생활여건의 악화로 사람이 살지 않는 생활사막화 공간으로 전락하며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지방 소멸지역이 되었음.
- 국가적 목적 달성을 위한 공유자원의 희생양이 되었음에도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역 주민이 감수해야 했던 부당한 불이익과 피해 구조에서 탈피할 수 있는 정당한 지원이나 보상에 대한 방안을 반세기가 지나도록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충청도의회는 충북지역에 남아있는 개발제한구역이 지정 당시 본래의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지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줄 것을 건의 드리며, 충북지역의 발전을 현저하게 저해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전면 해제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함.

- 보내는 곳 : 대통령, 국회의장, 국토교통부장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대전광역시장, 대전광역시의회의장, 청주시장, 청주시의회 의장, 옥천군수, 옥천군의회 의장

붙임 건의안 1부.

충청북도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촉구 건의안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1970년대 무분별한 도시확산 방지와 도시주변의 자연경관 및 녹지대 보호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1971년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입되었습니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서울·부산·대전과 같이 당장 인구 집중을 억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도시 주변지역”, “춘천·청주 등 장래 도시가 팽창 될 우려가 있는 도청 소재지 주변지역”이라는 기준으로 1973년 충북지역에 총 236.7km²의 면적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 이후 2002년에 청주권 개발제한구역을 전면해제 한 이래, 충북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은 지난 20여년간 56.6km² 중 단 4.6%인 2.6km²만 해제 되었을 뿐 약 54km²의 개발제한구역은 50년째 유지되어 오며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및 옥천군 군서·군북면 일대 개발제한구역 지역의 발전 저하와 해당 지역 주민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고충이 날로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국가적 목적 달성을 위한 공유자원의 희생양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개발제한구역 지역 주민이 감수해야 했던 부당한 불이익과 피해 구조에서 탈피할 수 있는 정당한 지원이나 보상에 대한 방안을 반세기가 지나도록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충북지역에 존치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은 ‘당장 인구 집중을 억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도시 주변지역’이라는 당시 지정 목적이 무색하게도 취약한 인프라시설과 생활여건의 악화로 사람이 살지 않는 생활사막화 공간으로 전락하며 지역발전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지역소멸의 위험을 높이는 것은 물론 개발제한구역 지역 주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가증시켜 지역의 화합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울무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소재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죽전·시동·선동리 등 10개리에 걸쳐 24.91km가 존치되고 있는데 이는 현도면 면적의 57.3%에 달합니다. 옥천군의 경우 2021년부터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충북도 내 대표적인 인구 감소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충북지역에 존치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이 지정 당시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줄 것을 건의드리며, 충북지역 개발제한구역의 전면 해제를 강력히 촉구하오니 164만 충북도민의 염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4. 6. .

충청북도의회